# 남양주별내 A1-1BL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2022.01.28], 주택관리번호 [2022000048]

■ 건설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05-2 일원 A1-1BL

■ 공급대상 : 통합공공임대주택 576호

총	건설호수	전용 18㎡	전용 26㎡	전용 36㎡	전용 46m²	전용 56㎡
	576	60	212	153	80	71

- LH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신청 관련 사항에 대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0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 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안 내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1.28(금)이며, 이는 입주자격(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2000048이며, 공고문은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앱(LH청약센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요건 및 일정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해당 일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1.28) 현재 성년자(청년 또는 신혼부부계층으로 신청하는 자는 만18세 이상 가능)인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및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고령자는 무주 택자)으로서 자산·소득 기준 및 입주자격 구분별 입주자격을 충족한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세대원수에 따라 공급합니다. 다만,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는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통합,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 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 ■ 임대조건

- ①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53호, 2021.12.30 제정)」에 따라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통해 산정됨에 따라, 동일 주택형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입주자격 구분별 세부 입주자격,임대조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②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은 입주자 세대구성원의 자산, 소득변동 등에 따라 변경 또는 할증 적용될 수 있습니다.
- ③ <mark>임대조건의 변경</mark>(임대조건의 상한, 증액, 할증)은 공급신청(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및 갱신계약(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정한 시점 기준) 시점의 입주자 소득수준 등을 확인하여 해당시점에 한하여 적용하며, 임대차기간 중에 소득변경 등에 따라 변경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임대기간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최대 거주기간(30년) 제한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적정면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세대구성원 수에 따라 최대(최소) 신청가능 면적이 제한**됩니다.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가능면적에 부합하지 않는 청약신청자의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입주자격 검증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및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고령자는 무주택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분리 배우자세대 포함)을 대상으로 조회
- (소득 및 자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분리 배우자세대 포함)을 대상으로 조회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713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sup>\*</sup>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

#### ■ 기타사항

- ① 신청접수는 코로나19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해 인터넷(PC: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App: LH청약센터)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장애인 및 만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방문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② 주택신청은 신청접수일 마감시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③ 우선공급 대상 중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 비주택거주자 등, 청소년 쉼터 퇴소자는 사업주체 또는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하며, 해당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현장방문접수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 ④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은 공동인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청약신청 연습하기"(2.14.부터 가능)를 통해 사전 연습이 가능합니다.

## 1. 공급대상

### ■ 공급형별 공급호수

		세대	당 계약면	!적(m²)			공급	호수			구조	01-
공급 형별	주거	주거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계	우선 공급	일반	주 거	해당동	및 난방	입주 예정		
	전용	공용	기타공용	주차장	B'"	- "	공급	공급	약자용		근당	
총계						575	306	221	48			
18A	18.43	11.4257	2.0626	17.1749	49.0932	44	26	18		1104동		
18B (주거약자용)	18.43	11.4257	2.0626	17.1749	49.0932	16	•		16	1104동		
26A	26.72	15.7032	2.9904	24.9004	70.3140	212	127	85		1101~8동	철근 콘크	
36A	36.57	20.9296	4.0927	34.0797	95.6720	121	68	53		1101~3동, 1105~7동	리트 /	'23.10 (예정)
36B (주거약자용)	36.57	20.9296	4.0927	34.0797	95.6720	32	•	•	32	1104동	지역 난방	
46A	46.60	25.8378	5.2153	43.4267	121.0798	80	45	35		1102~4동, 1108동		
56A	56.99	31.9197	6.3781	53.1092	148.3970	70	40	30		1101~3동, 1105~7동		

- 18B, 36B는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입니다.
- 56A 중 1개호는 입주개시 전 별도 공고를 통해 어린이집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 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8형의 주택에는 빌트인 가전제품 및 가구[냉장고, 가스쿡탑(2구), 책상, 에어컨]가 설치되며 26형.36형.46형.56형의 주택에는 빌트인 가전제품[가스쿡탑(26형-2구, 36형~56형-3구)]이 설치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가능 전용면적】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일반 가구	18m² ~ 36m²	26 m² 46 m²	26 m²	AGm² FGm²
중증장애인 가구	18m² ~ 46m²	26m² ~ 46m²	36m² ~ 56m²	46m² ~ 56m²

- 일반 가구는 세대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없는 신청가구를 말하며, 중증장애인 가구는 세대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는 신청가구를 의미합니다.
-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동위탁가정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세대원 수에 위탁아동을 포함합니다.
- 위 세대원수별 입주 가능면적은 할증없이 신청자 세대원수보다 1명 많은 세대원수 기준의 주택도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완화기준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 ■ 입주자격 구분별 배정호수

**주택 신청은 반드시 주택형 및 입주자격 구분별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만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자격별 접수기간 마감시간 전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 우선공급

				「공공	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딕 <mark>」별표5의2</mark> 7	제2호 나목			
		2)		3)	4)	5)	6)	7)	8)	9)	10)
			장기 <sup>集</sup> 북한	루무 제대군인, 이탈주민 등			비주택거주자 등				
공급 형별 총계	계	국가 유공자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파독근로자, 영구임대입주자, 일본위안부피해자, 소년소녀가정, 해외거주재외동포, 등록포로	부피해자,   1업근로자,   1업근로자,   구직근로자,   주재외동포,		비주택거주자, 최저주거기준 미달자, 무허가건축물 세입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총계	306	26	2	13	21	26	26	47	57	36	52
18A	26	•	•	•	•	•	•	18	8	•	
26A	127	12	1	7	•	•	18	21	33	•	35
36A	68	6	•	3	•	18	8	•	16	•	17
46A	45	8	1	3	6	8	•	8	•	11	•
56A	40		•	•	15	•	•	•	•	25	

## • 주거약자용 주택 및 일반공급

고그처벼	계	주거약자용		일반공급							
공급형별	АІ	주택공급	계	①청년	②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③고령자	④일반				
총계	269	48	221	54	54	54	59				
18A	18	•	18	4	•		14				
18B (주거약자용)	16	16		•	•	•	•				
26A	85	•	85	31	•	33	21				
36A	53	•	53	19	•	21	13				
36B (주거약자용)	32	32		•	•	•	•				
46A	35	•	35		28		7				
56A	30	•	30	•	26	•	4				

#### • 안내사항

-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 비주택거주자 등은 **사업주체 또는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 에 의하며, 해당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방문신청접수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 우선공급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동일한 입주자격 구분별 주택형의 일반공급 신청자로도 자동 신청(접수번호 2개 부여)됩니다.

신청자 중 우선공급 입주자격 2)부터 7)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일반공급의 ④일반 계층으로, 8)청년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일반공급의 ①청년 계층으로, 9)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일반공급의 ②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으로, 10)고령자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일반공급의 ③고령자 계층으로 자동으로 청약신청되어 접수번호가 부여됩니다.

- 청약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그 중 일부를 서류제출대상자(심사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신청자는 '우선공급 심사대상' 또는 '일반공급 심사대상' 또는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심사대상 상으로 모두 선정(또는 모두 낙첨)'될 수 있으며 적격 대상자인 경우 각 입주자격 구분별 당첨자 선정방식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단,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심사대상으로 모두(동시) 선정된 자는 당첨자 결정시 우선공급에서 낙첨되는 경우에 일반공급 심사자와 경쟁하여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는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동일한 공급형의 일반공급의 ④일반 계층 신청자로 청약신청 (접수번호 2개 부여, 공급신청서 작성 시 '일반공급 전환 희망'란 체크)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공급형의 일반공급의 ④일반 계층 신청자에 포함하여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일반계층 신청자 와 경쟁하여 당첨자 탈락한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예비자로서 경쟁하게 됩니다.
- 일반공급 대상호수는 **우선공급 신청 미달로 인한 잔여호수 일반공급 전환**으로 증가될 수 있으며, **우선공급 2)부터** 7)에 해당하는 잔여호수는 일반공급의 ④일반 계층으로, **우선공급 8)청년 잔여호수는 일반공급의 ①청년 계층**으로, **우선공급 9)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잔여호수는 일반공급의 ②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으로, 우선공급 10)고령자 잔여호수는 일반공급의 ③고령자 계층으로 전환하여 일반공급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일반공급, 주거약자용 주택의 신청자격은 「5.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임대조건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입주자 월평균소득의 비율에 따라 시세 대비 임대조건을 차등화(35~90%)하여 적용함에 따라, 동일 공급주택형 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월평균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됩니다. 소득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모든 소득금액은 세전금액을 의미)

### ■ '22년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

[단위 : 원/월]

					7	기준 중위소득	특 대비 (이혀	i <del>l</del> )				
가구 원수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기타 소 <del>득구</del> 간			
_ '	~30%	~50%	~70%	~100%	~110%	~120%	~130%	~150%	~160%	~170%	~180%	~190%
1인	583,444	972,406	1,361,368	1,944,812	2,139,293	2,333,774	2,528,256	2,917,218	3,111,699	3,306,180	3,500,662	3,695,143
2인	978,026	1,630,043	2,282,060	3,260,085	3,586,094	3,912,102	4,238,111	4,890,128	5,216,136	5,542,145	5,868,153	6,194,162
3인	1,258,410	2,097,351	2,936,291	4,194,701	4,614,171	5,033,641	5,453,111	6,292,052	6,711,522	7,130,992	7,550,462	7,969,932
4인	1,536,324	2,560,540	3,584,756	5,121,080	5,633,188	6,145,296	6,657,404	7,681,620	8,193,728	8,705,836	9,217,944	9,730,052
5인	1,807,355	3,012,258	4,217,161	6,024,515	6,626,967	7,229,418	7,831,870	9,036,773	9,639,224	10,241,676	10,844,127	11,446,579
6인	2,072,101	3,453,502	4,834,903	6,907,004	7,597,704	8,288,405	8,979,105	10,360,506	11,051,206	11,741,907	12,432,607	13,123,308
7인	2,334,178	3,890,296	5,446,414	7,780,592	8,558,651	9,336,710	10,114,770	11,670,888	12,448,947	13,227,006	14,005,066	14,783,125
8인	2,596,254	4,327,090	6,057,926	8,654,180	9,519,598	10,385,016	11,250,434	12,981,270	13,846,688	14,712,106	15,577,524	16,442,942

- 8인을 초과하는 가구의 기준소득은 1인 증가 시마다, 873,588원씩 증가합니다.
- (예시)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수가 3인 가구이면서 월평균소득이 4,000,000원인 경우 : 4구간 임대조건 적용

#### ■ 공급형·구간별 임대조건

- 공급형 · 구간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1.28) 현재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 소득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으며,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세전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4.입주자격」중 소득기준 및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형·구간별 임대조건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입주자의 경우에는 구간별 임대조건을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해당 시점의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조건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입주자 중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입주자의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제2호 가목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4.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임대조건 상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입주자격 중】

- ①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②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 ③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안전지원대상자
-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연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연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18A,B】구간별 임대조건

[단위 : 원/월] 임대조건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전환가능 구간 임대보증금 보증금 한도액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5%) 잔금(95%) 3,000,000 13,590,000 60,390 1구간 10,590,000 529,500 10,060,500 75,390 8,000,000 2,590,000 92,050

	2구간	12,103,000	605,150	50 11,497,850 86,160	+	5,000,000	17,103,000	61,160		
	41년	12,103,000	003,130		00,100	-	9,000,000	3,103,000	104,910	
	3구간	15,128,000	28,000 756,400 14,371,600 107,700	+	9,000,000	24,128,000	62,700			
	١٦ ٦	13,120,000	730,400	14,371,000	1,600 107,700	107,700	-	11,000,000	4,128,000	130,610
	4구간	19,667,000	983,350	350 18,683,650	140,010	+	16,000,000	35,667,000	60,010	
	412	19,667,000	903,330		140,010	-	15,000,000	4,667,000	171,260	
	5구간	24,206,000	1,210,300	22,995,700	172,320	+	20,000,000	44,206,000	72,320	
	٦١٦	24,200,000	1,210,300	22,993,700	172,320	-	19,000,000	5,206,000	211,900	
	6구간	27,231,000	1 201 550	25 960 450	102.000	+	23,000,000	50,231,000	78,860	
			27,231,000 1,36	1,361,550	25,869,450	193,860	_	21 000 000	6 231 000	237 610

### [2] 【26A】 구간별 임대조건

[단위 : 원/월]

		임대	조건		전환가능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구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sup>[]</sup>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5%)	잔금(95%)	ᆯᆸᆌᄑ		00 577	ㅁ케ㅗㅇㅁ	ㄹㅁ게ㅛ
1구간	15,128,000	756,400	14,371,600	107,700	+	9,000,000	24,128,000	62,700
112	13,120,000	730,400	14,371,000	107,700	-	11,000,000	4,128,000	130,610
2구간	17,290,000	864,500	16,425,500	123,080	+	12,000,000	29,290,000	63,080
41년	17,290,000	004,300	10,423,300	123,000	-	13,000,000	4,290,000	150,160
3구간	21,612,000	1,080,600	20,531,400	153,860	+	18,000,000	39,612,000	63,860
317	21,012,000	1,080,000	20,331,400	133,000	-	17,000,000	4,612,000	189,270
4구간	28,096,000	1,404,800	26,691,200	200,010	+	24,000,000	52,096,000	80,010
412	20,090,000	1,404,800	20,091,200	200,010	-	22,000,000	6,096,000	245,840
5구간	34,580,000	1,729,000	32,851,000	246,170	+	29,000,000	63,580,000	101,170
기년 -	34,360,000	1,729,000	32,031,000	240,170	-	27,000,000	7,580,000	302,420
6구간	38,902,000	1,945,100	36,956,900	276,940	+	33,000,000	71,902,000	111,940
이건	30,302,000	1,343,100	30,930,900	270,940	-	30,000,000	8,902,000	339,440

## ③【36A,B】구간별 임대조건

[단위 : 원/월]

		임대	조건			전환가능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구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전원기 8 증금 한도액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5%)	잔금(95%)	걸리네프		6 0 T 4	미네포이미	걸리네프
1구간	20,714,000	1,035,700	19,678,300	147,460	+	12,000,000	32,714,000	87,460
11.5	20,714,000	1,033,700	19,070,300	147,400	-	16,000,000	4,714,000	180,790
2구간	23,674,000	1,183,700	22,490,300	168,530	+	16,000,000	39,674,000	88,530
21건	23,074,000	1,103,700	22,490,300	100,550	-	18,000,000	5,674,000	206,030
3구간	29,592,000	1,479,600	28,112,400	210,670	+	24,000,000	53,592,000	90,670
317	29,392,000	1,479,000	20,112,400	210,070	-	23,000,000	6,592,000	258,580
4구간	38,470,000	1,923,500	36,546,500	273,870	+	32,000,000	70,470,000	113,870
412	30,470,000	1,923,300	30,340,300	213,010	-	30,000,000	8,470,000	336,370
5구간	47,348,000	2,367,400	44,980,600	227 070	+	40,000,000	87,348,000	137,070
가건	47,340,000	2,307,400	44,960,000	337,070	-	37,000,000	10,348,000	414,150
6구간	53,266,000	2,663,300	50,602,700	379,200	+	45,000,000	98,266,000	154,200
0 [건	33,200,000	2,003,300	30,002,700	319,200	-	42,000,000	11,266,000	466,700

## ④【46A】구간별 임대조건

[단위 : 원/월]

		임대	조건		전환가능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구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전된기능 증금 한도액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5%)	잔금(95%)	걸음네표		6 0X4	841260	걸심네표
1구간	26,417,000	1,320,850	25,096,150	188,060	+	15,000,000	41,417,000	113,060
11.5	20,417,000	1,320,630	23,090,130	100,000	-	20,000,000	6,417,000	229,720
2구간	30,191,000	1,509,550	28,681,450	214,930	+	21,000,000	51,191,000	109,930
2 구간	30,191,000	1,509,550	20,001,430	214,930	-	23,000,000	7,191,000	262,840
3구간	37,738,000	1,886,900	35,851,100	268,660	+	31,000,000	68,738,000	113,660
317	37,730,000	1,000,900	33,031,100	200,000	-	29,000,000	8,738,000	329,070
4구간	49,060,000	2,453,000	46,607,000	349,260	+	41,000,000	90,060,000	144,260
412	49,000,000	2,433,000	40,007,000	349,200	-	38,000,000	11,060,000	428,420
5구간	60,382,000	3,019,100	57,362,900	420.860	+	51,000,000	111,382,000	174,860
٦١ <sup>년</sup>	00,362,000	3,019,100	31,302,900	429,860	-	47,000,000	13,382,000	527,770
6구간	67,929,000	3,396,450	64,532,550	483,590	+	58,000,000	125,929,000	193,590
012	01,323,000	3,330,430	04,332,330		-	53,000,000	14,929,000	594,000

## ⑤【56A】구간별 임대조건

[단위 : 원/월]

		임대	조건			전환가능	최대전환 시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구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전원기능 증금 한도액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5%)	잔금(95%)	걸음네표	_ <del></del> _	6 0 T 4	임네포증리	걸심네표		
1구간	32,235,000	1,611,750	30,623,250	220.480	+	19,000,000	51,235,000	134,480		
一十七	32,233,000	1,011,730	30,023,230	229,480	-	25,000,000	7,235,000	281,560		
2구간	36,841,000	1,842,050	34,998,950	262,270	+	25,000,000	61,841,000	137,270		
2 구간	30,041,000	1,042,030	34,990,930	202,270	-	29,000,000	7,841,000	322,680		
3구간	46,051,000	2,302,550	43,748,450	327,840	+	38,000,000	84,051,000	137,840		
가건	40,031,000	2,302,330	45,740,450	327,040	-	36,000,000	10,051,000	402,840		
4구간	59,866,000	2,993,300	56,872,700	426,190	+	51,000,000	110,866,000	171,190		
4구간	39,000,000	2,993,300	30,072,700	420,190	-	47,000,000	12,866,000	524,100		
5구간	73,682,000	3,684,100	69,997,900	E24 E40	+	62,000,000	135,682,000	214,540		
가건	73,002,000	3,004,100	09,997,900	524,540	-	58,000,000	15,682,000	645,370		
6구간	82 802 000	4 1 4 4 6 0 0	79 747 400	590,110	+	70,000,000	152,892,000	240,110		
0 [건	82,892,000	4,144,600	78,747,400		-	65,000,000	17,892,000	725,520		

## 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 공급일정

	신청	접수 일정	인터넷신청자	다처자	계약체결	
신청구분	인터넷	현장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당첨자 발표		
우선공급	'22.02.15(화), 10:00 ~ 02.16(수), 17:00 *기간 내 24시간 가능	'22.02.15(화)~02.16(수) 10:00~16:00 *(장소)LH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b>'22.03.03(목) 17:00</b> 이후 *LH 청약센터 게시	'22.06.30(목) 17:00	[전자계약] '22.07.12(화) 10:00 ~07.14(목) 17:00	
일반공급 / 주거약자용 공급	'22.02.17(목), 10:00 ~ 02.18(금), 17:00 *기간 내 24시간 가능	'22.02.17(목)~02.18(금) 10:00~16:00 *(장소)LH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22.03.04(금)~03.11(금)	[ <b>조회방법]</b> * <b>ARS(1661-7700)</b> *LH 청약센터	[현장계약]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22.07.13(수)~07.14(목) 10:00~16:00	

• 우선공급 대상 중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 비주택거주자 등은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하며, 해당 우선공급 접수기간('22.02.15(화)~16(수))에 현장방문접수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현장 신청접수 장소: LH 남양주권 주거복지지사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번길 22-80, 신해메디컬타워 4층) ※ 주차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 우선공급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도 자동 신청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남양주별내 A1-1BL 담당자 앞)

- ※ 등기우편은 '22.03.11(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 현장 계약체결 장소 : 추후 당첨자 별도 통보

### 신청방법

고객님의 신청 편의 및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인터넷(PC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으로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구비서류(주민등록표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를 전부 지참하시어 현장방문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유의사항

- 인터넷(PC 및 모바일) 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신청접수는 PC(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명칭: LH 청약센터)을 통한 신청이 원칙이나, 장애인, 만65세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PC, 모바일)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우선공급 대상 중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 등은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하며, 해당 **우선공급 접수기간('22.02.15(화)~2.16(수) 10:00~16:00)에 현장방문접수(남양주권 주거복지지사)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자격별(우선공급, 일반공급, 주거약자용 주택) 지정된 접수기간 동안에만 가능하며, 취소 및 수정은 신청자격별 접수기간의 마감시간까지만 가능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우선공급 신청시 자동신청 된 일반공급신청은 일반공급 신청기간 중 취소 및 수정 불가
- 인터넷(PC · 모바일) 신청절차



- PC로 신청한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 신청한 내용을 PC로도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격별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 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 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청약납입횟수,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 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주택] 주택명 : 남양주별내 A1-1BL 통합공공임대주택, 주택관리번호 : 2022-000048

구분	조회방법
인터넷발급	<b>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b>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 확인
인터넷이 불가능한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 금액 및 회차 확인

-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신청자께서는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22.03.03(목) 17시 이후에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셔야 하며,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신청자께서는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 (서류제출 대상자 확인방법)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대상자 조회(임대주택)』 클릭
  - ※ 현장 방문신청자께서는 접수신청 시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고,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중복신청시 전부 무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시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 미제출 또는 허위 임신, 불법낙태, 입주 전 파양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임신부부 출산 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 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 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 PC 신청방법 (PC 공동인증서 설치 → LH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신청접수 → 신청완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공동인증 로그인	임대주택- 인터넷 청약 클릭	$\rightarrow$	단지 및 주택형 선택	$\rightarrow$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청약신청 정보 및 배점기준 정보 작성	신청내용 확인	$\rightarrow$	청약신청서 제출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신청접수 처리할 PC에서 신청 전에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2.14.부터 가능)로 충분히 모의연습** 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모바일 신청방법 (스마트폰 공동인증서 설치 → 'LH청약센터' App 설치 → 신청접수 → 신청완료)



- 모바일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설치 및 pc로 부터 공인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연습하기 → 인증서발급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App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1) 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앱다운
  - (2)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앱다운
- 모바일 신청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 신청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 연습하기'(2.14.부터 가능)에서 확인** 하시기 바라며, 시스템 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신청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모바일 신청의 경우,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신청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1.28) 현재 ①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②자산·소득 기준 및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 별표5의2에 따른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을 충족한 자(「5.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 참조)에 31세대 1주택 기준으로 ④세대원수에 따라 공급합니다. 다만,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는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를 통해 미성년자도 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①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자녀가 반드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함)
  -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형제자매가 반드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함)
  - ③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④ 청년, 예비신혼부부 및 우선공급 대상인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 단,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에서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의 만 18세의 "청년"계층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구성원 전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검증(주택소유, 소득, 자산)의 대상이 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ul><li>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li><li>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li></ul>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청년 계층 및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고령자 계층의 주택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되며,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세대구성원의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주택소유가 확인되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하며,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 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 주택소유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됩니다.
- 주택 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①과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 ②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③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 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 ②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 ③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에 유의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m²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m² 이하의 주택(20m²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자산보유기준 및 산정방법

### ■ 자산보유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에 의하여 별도로 제정.고시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자산 가액 합계가 아래의 기준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구분	자산보유 기 <del>준금</del> 액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b>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억 9,200만원 이하</b>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b>개별 자동차가액 3,496만원 이하</b>

- <mark>청년 계층의 보유 자산가액은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mark>
- 예비신혼부부의 보유 자산가액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고령자 계층의 보유 자산가액은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자산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하며,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이 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산정방법

구분		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총자산	부 <del>동</del> 산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 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 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 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금융자산 │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 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 기타자산 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부채는 총자산 산정 시 자산합계 금액에서 차감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부채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자산항목에 대한 설명 및 자료 출처는 「17.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기준 및 산정방법

## ■ 소득기준

- 소득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금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세전 금액으로, 신청자 세대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입주자격 **구분별 소득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공급대상별 소득기준금액은 「5.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계층의 소득금액은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소득금액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고**령자 계층의 소득금액은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혼인중이 아니면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경우 포함)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의미하며,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를 포함합니다.
- 소득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하며,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며, 소득항목에 대한 설명 및 자료 출처는 「17.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ㆍ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정방법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1세대 1주택 기준 공급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1세대 내에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부(세대주)+자(세대원)」인 세대에서 부와 자가 각각 고령자(부), 청년(자)의 자격으로 청약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되므로, 일반계층 등 다른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을 통해 1세대 내 1주택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세대주가 아닌 청년의 경우, 1세대 내에서 세대원인 청년계층이 각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 부(세대주) + 형(세대원) + 동생(세대원) → 청년(형), 청년(동생) 각각 신청 가능)
- 세대주가 아닌 청년,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고령자,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까지 세대를 분리하여야 하고, 우리공사에 주민등록등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에 해당**하므로 기 거주중인 임대주택을 당해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명도하여야 합니다.

##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

• 공공임대주택의 과소·과밀점유 방지를 통한 적정면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따라, **입주자의 세대구성원 수(태아 포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대원수별 입주 가능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세대원수	공급가능 면적	해당 공급형
	<b>전용면적 40m² 이하</b> 의 주택을 공급	18A, 18B, 26A, 36A, 36B
1명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18A, 18B, 26A, 36A, 36B, 46A
2명	<b>전용면적 20㎡ 초과 50㎡ 이하</b> 의 주택을 공급	26A, 26B, 36A, 36B, 46A
3명	<b>전용면적 30㎡ 초과 60㎡ 이하</b> 의 주택을 공급	36A, 36B, 46A, 56A
4명 이상	<b>전용면적 40m² 초과</b> 주택을 공급	46A, 56A

- 세대원수에 맞지 않는 주택 공급형을 청약신청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위탁가정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세대원 수에 위탁아동을 포함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는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5.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

## 우선공급

아래의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상에 기재된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대 상
국가유공자 등	•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이며 자산보유기준을 총족하는 사람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이며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⑩의 경우에는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②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소득수준 등을 고려
장기복무 제대군인,	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  ②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③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우선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④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무주택 및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④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북한이탈주민 등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⑤ 「아동복지법」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하는 사람  ⑤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사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⑥ 1963년 12월 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독일연방공화국으로 진출했던 근로자중 간호사, 광부 및 이에 준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⑥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사람
	<ul> <li>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②, ④, ⑤, ⑥의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의 경우에는 자산요건도 적용하지 않습니다.)</li> <li>②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안전 지원대상자</li> <li>④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하는 사람</li> <li>⑤ 투자촉진 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대한민국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에게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li> <li>②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li> </ul>
다자녀가구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이며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의 경우에는 세대분리된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②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사람
<ul> <li>⊕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있는 사람</li> <li>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 부모가족</li> </ul>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이며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이며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한 차례로 한정)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하며,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비닐·부직포 등으로 건축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주거의 용도로 제공되는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작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노숙인시설 (노숙인복지지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침수 피해가 우려되거나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반지하・지하층 등에 해당하는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하는 사람  ()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미성년자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하는 사람  () 공익사업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ul> <li>무주택자로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li> <li>②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li> <li>※ (유의사항) 세대주가 아닌 청년은 신청자 본인만 가구원수로 인정("1인")되며, 주택형도 1인 기준으로만 신청 가능</li> <li>④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li> <li>(1)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출생일 1982.1.29.~2004.1.28)일 것</li> <li>(2)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또는 가정위탁이 종료 예정이거나 퇴소 또는 종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li> <li>(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청소년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li> <li>⑤ 혼인 중이 아닐 것</li> </ul>
<ul> <li>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li> <li>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ul> <li>(1)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li> <li>(2)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li> <li>(3)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만 6세 이하 자녀(2015.1.29.이후 출생)를 둔 사람 (태아 포함)</li> <li>(4) 만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li> </ul> </li> <li>④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일 것</li> <li>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계)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li> </ul>
•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으로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유의사항)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경우에도 소득 및 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함

## 일반공급

일반공급 자격 미충족 시 부적격 처리되오니 반드시 아래의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상에 기재된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 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년

- 무주택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②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 총자산가액이 2억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일 것
    - ※ (유의사항) 세대주가 아닌 청년은 신청자 본인만 가구원수로 인정("1인")되며, 주택형도 1인 기준으로만 신청 가능
  - ④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출생일 1982.1.29.~2004.1.28)일 것
  - ☞ 혼인 중이 아닐 것

#### ■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 총자산가액이 2억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일 것
    - ※ (유의사항)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경우에도 소득 및 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함
  - ④ 만 65세 이상(**1957.1.28.이전 출생)**일 것

####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2)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3)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태아 포함)
  - (4) 만 6세 이하 자녀(**2015.1.29.이후 출생)**를 둔 한부모가족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 된 경우에 한함)
  - 母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일 것
  -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계)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8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16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90퍼센트) 이하, 총자산가액이 2억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일 것
    - ※ (유의사항) 신청자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의미합니다.

## ■ 일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 총자산가액이 2억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일 것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반드시 아래의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상에 기재된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주택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퍼센트(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 총자산가액이 2억9,2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이 3,496만원 이하인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②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 ④「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❷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에서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 신청자(일반 계층)로 전환을 신청할 경우 동일 공급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일반 계층) 신청자와 추첨으로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전환신청을 하여야 하며(공급신청서 작성 시 '일반공급 전환 희망'란 체크) 동일 공급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 신청자와 경쟁하여 당첨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예비자로서 경쟁하게 됩니다.

## 6.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안내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2022.03.03.(목) 17:00 이후]
- 신청자 본인이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 PC: LH청약센터→상단『인터넷청약』클릭→활성창 오른쪽 아래『서류제출 대상자 조회(임대주택)』클릭
  - \* 모바일 : "LH청약센터" 앱(App)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선택
- 서류제출 기간: '22.03.04.(금) ~ 03.11.(금)

#### ■ 서류제출 방법

- ① 인터넷(PC 및 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만(일반우편 불가) 접수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2.03.11.)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등기우편 발송주소]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남양주별내 A1-1BL 담당자 앞 \* 봉투 겉면에 "남양주별내 A1-1 서류제출"이라고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현장방문 신청자 : 신청과 동시에 필요서류(신청자 신분 확인서류 및 청약신청 구비서류)를 모두 구비해서 현장접수 시 제출

구 분	방문신청자 신분 확인 서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7. 신청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1.28.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1.28)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PC 또는 모바일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제출 기간에 제출하며, 현장방문 신청자는 신청 접수 시점에 일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시 <mark>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표기</mark>되도록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 서류제출대상자는 모집호수의 일정배수를 선정함에 따라, **일부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후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입주자격 구분별 당첨자 선정방식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공통 제출서류 [필수]

구비서류	비고	부 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1]	·(대상자)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 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1통
금 <del>융</del> 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양식2]	·(동의방법) 공고 시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양식3]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주민등록표등본	<ul> <li>・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li> <li>・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li> <li>※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 표등본 1통 추가 제출</li> <li>※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추가 제출</li> <li>※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li> </ul>	1통
---------	--	----

## ■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만 제출)

구비서류	비고	부수
주민등록표초본 *우선공급 대상자는 반드시 제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우선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 상 남양주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우선공급 신청자 중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 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하며,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을 추가 제출)	1통
가 <del>족</del> 관계증명서 *해당자만 제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통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해당자만 제출	【아래 해당자만 제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1통
임신진단서 *해당자만 제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구간 판정 시,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산정 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우선공급,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중 배점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 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신혼부부,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다자녀가구의 자격으로 주택을 신청하는 신청자 중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해당자만 제출	【 <b>아래 해당자만 제출】</b> 주택 신청자 중 <del>중증</del> 장애인 자격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1통

## ■ 유형 구분별 제출서류 (해당하는 유형의 신청자만 제출)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시·군·구청
【납북피해자】「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름	공공임대주택 신청용 납북피해자 확인서	통일부 (이산가 <del>족</del> 과)
【중소기업근로자】「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동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중소기업은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 3년 이상)인 자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비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우선공급 대상여부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발급처로 문의	(제출서류) 공공임대주택 역 (발급처) - <b>기간직, 파견직 근로자</b>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 - <b>일용근로자</b> 는 신청인으 노동지청 - <b>특수형태근로종사자</b> 는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	는 현 소속 사업장 지청   거주지 관할 고용 - 노무제공 사업장
【가정폭력 피해자】「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	가정폭력피해자보호 시설(주거지원시설) 입소(입주) 확인서	시・군・구청
【성폭력 피해자】「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 입소확인서	시·군·구청
【아동위탁가정】「아동복지법」제3조제6호에 따른 아동위탁가정 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추천서	시·군·구청
【범죄피해자】「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공공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탄광근로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주소지 관할 한국광해관리공단
【파독근로자】 1963년 12월2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했던 근로자 중 간호사 광부 및 이에 준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 파독근로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출입국사실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요청기한 내에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파독근로자 우선공급자격을 인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사람(수급자가 아닌 자)	임대차계약서사본 또는 계약사실증명원	해당 관리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안전지원대상자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소년소녀가정】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시·군·구청
【귀환국군포로】「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다자녀가구】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불가한 경우 ※ 단, 이혼, 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행정복지센터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자 ※ 단,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 직계존속(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중증장애인인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 추가 발급 필요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중증장애인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청년-아동복지시설 퇴소자】「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지설에서 퇴소 또는 가정위탁이 종료 예정이거나 퇴소 또는 종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시・군・구청)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 중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경우	(필수) 자녀의 기본증명서 (해당자) 입양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	행정복지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해당자)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	행정복지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입주 시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빙을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예비산혼부부 세대성확인서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양식4]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②~● 중 해당하는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④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장애가 있는 신청자는 ⑥에 따른 증빙서류 추가 제출 ※ 사회취약계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는 수급자 증명서 추가 제출	② 제출서류 없음 ④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⑤ 국가유공자 확인원 ④ ('12.7.1전 등록자) 지원대상자 확인원 ('12.7.1이후 등록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④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④ 고염세법적용대상확인원	② - ④ 행정복지센터 ⑤ 국) 比定大(不均 ⑥ 국) 比定大(不均 ⑥ 국) 比定大(不均 ⑥ 국) 比定大(不均 ⑥ 국) 比定大(不均 ⑥ 국) 比定大(不均

## ■ 임대조건 상한 대상자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국가보훈처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유공자, <del>특수임무유공</del> 자 또는 그 유족 및	수급자 증명서	행정 <del>복</del> 지센터	
참전유공자 	소득인정액 산정결과서	007/12/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CC BE MOAN AC ECCITET ANA	수급자 증명서	행정 <del>복</del> 지센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 <del>복</del> 지센터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수급자 증명서		

※ 서류가 중첩될 경우 1부만 제출하시면 되며, 미제출 시 임대조건 상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8. 입주자 선정방법

① 우선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우선 선정 후, ② 우선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전환을 희망한 자에 한함) 중 일반공급 심사대상자였던 자를 일반공급 신청자와 경쟁하여 일반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며, ③ 일정비율규모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우선공급

- 우선공급 입주자격 구분별 배정호수 내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 시 아래의 배점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① 배점합산 → ② 추첨)
- 단, 장애인 계층의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을 경우, ②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② 배점합산 → ③추첨 순으로 선정합니다.

배점항목	3점	2점	1점
①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이하	50%초과 70%이하	70%초과 100%이하
② 부양가족 수 (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3인 이상	2인	1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b>남양주시</b> ) 연속 거주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④ 미성년자녀수 (만19세 미만, 태아포함)	3명 이상	2명	1명
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

- 6 공사 통합공공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5점)
  -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3점)
  - \* (기간산정) 과거 공사 통합공공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 다수의 통합공공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 갱신계약은 제외
-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 입주자모집공고일 속하는 당해년도의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합계액 비율로 산출
- **부양가족 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 + 신청자의 형제, 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단,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 **당해 주택건설지역**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남양주시를 의미. 이 경우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주택건설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봄. (당해지역 거주기간 중 주민등록이 말소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재등록일로부터 계속 거주기간을 산정)
- **미성년자녀수**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함. 이혼.재혼의 경우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 등은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통보 명단에 따릅니다.
- **우선공급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도 자동 신청**되며,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일반공급 심사 대상자는 **동일한 공급형별의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충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우리공사 자체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에 따른 잔여동 • 호가 발생하여도 동 • 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주거약자용 주택 배정호수 내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 시 아래의 배점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① 배점합산 → ② 추첨)

배점항목	3점	2점	1점
① 부양가족 수 (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3인 이상	2인	1인
[2] 당해 주택건설지역( <b>남양주시</b> ) 연속 거주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③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④ 사회취약계층 (3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5 공사 통합공공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5점)
  -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3점)
  - \* (기간산정) 과거 공사 통합공공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 다수의 통합공공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 갱신계약은 제외
- **부양가족 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 + 신청자의 형제, 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단,「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 **당해 주택건설지역**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남양주시를 의미. 이 경우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주택건설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봄. (당해지역 거주기간 중 주민등록이 말소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재등록일로부터 계속 거주기간을 산정)
- **장애정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장애인 증명서를 통해 판단)에 따르며, 장애정도 관한 자세한 사항은 「18.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사회취약계층**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수급자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가점인정을 받으실 수 있음.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중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동일 공급형별 일반공급 신청자로 신청되며, 주거약자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공급형별의 일반공급의 「일반 계층」 신청자에 포함하여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일반공급에서 낙첨 시 주거약자용 주택의 예비자로 경쟁하게 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우리공사 자체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에 따른 잔여동·호가 발생하여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입주자격 구분별(청년, 고령자 등) 배정호수 내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격 구분별 모집호수 대비 신청접수 미달에 따른 잔여호수는 일반공급 입주자격 구분별(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일반)에 따른 구분없이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급형별로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우리공사 자체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에 따른 잔여동·호가 발생하여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9.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2022.06.30(목), 17:00]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충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소멸됩니다.
-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 입주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 전자계약【계약기간: '22.07.12(화) 10:00 ~ 07.14(목) 17: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 계약체결 절차】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 「우리공사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 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SMS는 신청접수 시 "SMS 수신동의"한 신청자에 한하여 발송하고, 수신동의하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계약준비 완료안내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저장이 가능합니다.
- 현장계약 【계약기간: '22.07.13(수) 10:00 ~ 07.14(목) 16:00】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장소는 당첨자에게 별도안내 예정

공통서류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ul> <li>계약금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li> <li>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li> <li>계약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중 택1)</li> <li>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li> </ul>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 10. 기타 유의사항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우리공사에서 제공하는 전화 및 방문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신청**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세대모형,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문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시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팸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 원칙에 따라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신청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동시신청 하는 경우 중복 신청에 해당)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01.28.)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접수 마감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소명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후 퇴거 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임대주택 거주 중에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격(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기준) 기준을 충족하시지 못할 경우에는 갱신계약 임대 조건이 할증 적용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갱신계약이 거절되고,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8.12.11)에 따라 **분양권등(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당첨자 발표일 이전에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당첨이 되더라도 계약이 불가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부적격 해제 또는 해지되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 중에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배우자는 반드시 신청 당시 제출한 예비배우자이어야 함)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미제출 등 혼인관계가 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이 취소되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을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LH청약 센터)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우리공사로 서면통보(담당부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은 우리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주개시 이전에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행사를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등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입주예정 시기는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및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입주 약 2개월 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간주합니다.
- 입주 시 잔금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 본인 확인 후 세대열쇠를 교부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미납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제 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증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가능하며, 신용상태 및 대출 한도를 해당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창호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설치, 대출 등)는 우리공사와는 무관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11. 지구 및 단지여건 등

### 지구여건

-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 지구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에는 자동 크린넷 시설(쓰레기이송설비)가 설치됩니다. 이에 따라 크린넷 투입구가 세대 내에서 보일 수 있으며 냄새 및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 서측으로 서울이 인접해있고 북측으로 의정부, 남측으로 구리갈매 지구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측으로 진접, 왕숙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 수도권 제1외곽순환도로가 지구를 관통하며 별내 IC를 통해 진입이 가능합니다.
- 별내 지구 북측에 4호선 별내별가람역이, 남측으로 경춘선 별내역(8호선 개통예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입주 후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등 주변 도로 및 인근 119특수구조대로 인해 소음(차량 및 헬기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주변 도로, 여건 및 현장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남양주 별내지구 내, 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단지 위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토지이용계획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계획 (건축, 토목, 조경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여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쇄 상 오류 등의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의 조경석 시공구간 등 경계부는 변경(단차 등)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근 학군은 덕송초등학교(도보 통학 가능) 및 별가람 중, 고등학교(도보 통학 불가능)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서측으로 불암산, 북측으로 수락산, 도로변에 개천, 남측으로 주거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대규모 근린생활 시설이 없음으로 현장 주변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단지 내외의 구조물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전(후)면 소방 안전매트 전개구간은 식재가 불가능하며 특히 1층 세대의 경우 식재 제한에 따른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소방전용도로 등은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동 1층 및 지하 1층은 필로티 및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로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시설은 지역주민이 같이 사용하게 될 수 있는 지역편의시설이 설치되고 운영 및 관리는 남양주시에서 하므로 관련 문의는 남양주시로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경계부는 상위계획(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담장(울타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식재, 야외시설, 저층부 외관, 동 현관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지하층에 전기실(1105~6동 인근)등 공용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발전기실, 설치로 인해 인근 세대는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B1, B2로 이루어져있으며, 주행부 차량 통과 시 줄눈으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경사로 인하여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차량 승하차 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주차대수는 일반 266대, 확장형 164대, 전기차 22대, 경차 52대, 장애인 16대,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는 지상 3대(일반2대, 장애인1대)이며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하면 모두 지하주차장 주차입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중 지하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 높이는 2.7m입니다.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 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휀룸이 설치되며 휀룸 상부 환기탑으로 인해 가동 시 소음,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1층, 지상1층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어린이집, 지하주차장 진입램프, 놀이터, 휴게 공간, 실외기 설치 등)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불편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획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도로의 포장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대 및 재활용품 보관소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 후 설치될 예정이고 특히 쓰레기 분리수거대는 세대 내에서 보일 수 있으며 주변으로 냄새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2층을 포함한 저 층세대는 계약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치변경 요청은 수용이 불가합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등이 일부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일부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주동 배치 상 사다리차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층세대 등 입주예정자는 이사 전 이사 업체 및 관리사무소와 사전 혐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4,5,6 및 7동 지붕에 태양광발전설비 집광판이 설치되며 사양에 따라 설치면적 및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에 차량출입을 통제하는 차량출입통제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단지 내 한전PAD 및 한전 변압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현장여건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 안테나 및 중계 장치가 5,6 및 7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현장여건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청안테나가 1106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현장여건에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CCTV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시설물(주동,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의 위치, 구조, 색채와 지반고, 공용부위 마감재 등은 추후 측량결과와 지반현황 및 각종 평가, 심의협의 결과, 관련 법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명칭, 동 표시, 아파트 문양, BI로고, 벽체줄눈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성능 향상 등을 위해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 비상탈출용 칸막이는 화재 시 대피통로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물건 등을 적재하는 행위는 관련법령에 저촉되므로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마감재 중 외기에 면하는 내부 벽체는 시멘트판 마감재(기성제품)로 충격을 가할시 파손될 우려가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음매가 미려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하자사항이 아님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본 주택의 단위세대는 평면설계는 발코니 비확장형을 기본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 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 및 발코니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마감자재 내역은 세대 타입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 타입은 발코니(세탁실)공간이 협소하여 대용량 세탁기 및 건조기 설치가 제한되거나, 세탁기문과 벽 및 기타설비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바닥재, 벽지 및 벽타일, 인조대리석 등은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벽지(도배)공법상 초배지 +정배지 봉투바름 시공 시 벽면과 도배지가 밀착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대시설 등) 문틀과 문짝 사이 경첩부분에 손끼임방지재가 설치되며 색상이나 디자인은 내부지침에 따라 설치됩니다.
- 현관, 발코니, E/V홀 등의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구조벽 외 조적벽체, 경량벽체 등이 시공될 예정이며 추후 중량물 거치 시 일반콘크리트 못 등으로는 거치물의 낙하 우려가 있으므로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하며 특히 벽걸이 가전제품 등을 설치할 때 유의해야 합니다.
- 욕실 출입문과 천장 마감재는 ABS재질이며 천정에 점검구를 시공할 예정입니다.
- 각 단위세대 형별로 평면계획에 의거 주방가구 길이가 서로 상이합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신발장은 세대 타입별 상이하며 가구형 신발장으로 설치되는 세대와 시스템선반형 신발장으로 설치 되는 세대가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공사용 하드웨어는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외부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은 공사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대 천장 높이는 2.3M로 시공오차에 의해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거 합성수지제창호, 목제창호, 타일, 일반가구, 주방가구, 금속제창, 자연석판석 등의 자재는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타일 나누기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 배관 등이 설치되므로 별도의 마감이 없으며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함으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남양주 별내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각 세대에 공급함에 따라 입주자 취향에 따른 고온의 바닥난방 등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비배관 등의 점검을 위하여 점검구 또는 점검홀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붙박이 마감재(옵션 가구를 포함한 신발장, 붙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은 별도의 마감이 없습니다.

- 침실 및 거실벽에 설치되는 온도조절기의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은 시스템욕실(UBR)로 시공되며 욕실바닥 난방은 없습니다.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욕실천정에 설치되는 욕실팬은 세대 타입별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소방 관련법에 따른 제연설비가 설치된 아파트에는 일부 세대의 현관 출입문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됩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팸플릿 등을 확인 하여야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내 환기는 제1종 환기방식(강제 급·배기)을 적용하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및 제습기 집수정 가동 등으로 전기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유도등 등이 시공됩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이 설치됩니다.
- 모든 세대 타입의 욕실에는 욕조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팸플릿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설치되는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욕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통합공공임대 시범단지이므로 관계부서 협의 결과에 따라 마감재 사양이 변경되거나 상향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일정 개별 통보)
- 입주자의 인테리어 임의시공에 따른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원인규명의 의무는 입주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2.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아래 공공주택성능등급은 예비인증 내용으로, 본 인증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능부문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소음 관련 등급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1. 내구성	*
 구조 관련 등급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이용이성 공용부분	*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해당없음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해당없음
	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해당없음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해당없음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환경 관련 등급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해당없음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해당없음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해당없음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비오톱 조성	해당없음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해당없음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생활환경 관련 등급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 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텐츠	*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화재·소방 관련 등급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분	적용 여부
외벽(직접면)	적 용
외벽(간접면)	적 용
창호(직접면)	적 용
창호(간접면)	적 용
지붕	적 용
바닥(직접면)	적 용
바닥(간접면)	적 용
바닥(층간바닥)	적 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 용
고효율LED	적 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 용
절수설비	적 용
고효율설비	적 용

# 13.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업체	감리업체
A1-1	한국토지주택공사 (120-82-09373)	주식회사 금강주택(211-81-81882) 한일개발(주)(129-81-45758)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주식회사 (120-81-93646)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 14.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임대조건 상한

「통합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제6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급형·소득구간별 임대조건에도 불구하고, 임대조건 상한 금액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 임대조건 상한 대상 여부는 주거급여 수급여부 및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 적용대상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 ① (가목)「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② (나목)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_\_\_\_\_\_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③ (다목)「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④ (라목)「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임대조건 상한계산

•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수급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담** 

주거급여	임대조건 상한
수급 ()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에 입주자가 수령하는 <b>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전환임대료 범위</b> 내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급 x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제2호 가목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주거급여법」 제7조 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의미합니다.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전환임대료**는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의 소득에** 따른 기본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을 환산한 임대료를 의미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임대조건

• 주거급여 수급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6%이하인 자(소득구간계수 1~2구간에 해당)"임에 따라, 임대조건 상한에 따른 임대조건은 1~2구간만 안내드립니다. 소득금액 검색결과 소득구간계수가 3구간에 해당하시는 신청자는 임대조건 상한 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1 18A,B / 26A / 36A,B : 기존 임대조건과 동일

② 46A: 일부 상한적용 있음 (아래 표는 상한적용 되는 세대구성원수만 표기)

[단위 : 원/월]

세 대		임대	조건			전환가능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구성원수	계	임대보증금 계약금(5%)	잔금(95%)	월임대료	5	선원기능 보증금 한도액	임대보 <del>증</del> 금	월임대료
1구간 입	J주자 (기준 중 <b>약</b>	위소득 대비 309	% 이하) : 세	대구성원수가 2	인 (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임대조건	과 동일
1인	24,205,000	1 210 250	22 004 750	172,310	+	12,000,000	36,205,000	112,310
1.5	24,203,000	1,210,250	22,994,750	172,310	-	19,000,000	5,205,000	211,890
2구간 입	J주자 (기준 중 <b>약</b>	위소득 대비 50억	% 이하) : 세	대구성원수가 3	인 (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임대조건	과 동일
1인	24 205 000	1 210 250	22.004.750	172 210	+	12,000,000	36,205,000	112,310
15	24,205,000	1,210,250	22,994,750	50 172,310	-	19,000,000	5,205,000	211,890
2인	27.075.000	1 252 750	25 721 250	192,740	+	16,000,000	43,075,000	112,740
۷ تا	27,075,000	1,353,750	25,721,250	192,740	-	21,000,000	6,075,000	236,490

## ③ 56A: 일부 상한적용 있음 (아래 표는 상한적용 되는 세대구성원수만 표기)

[단위 : 원/월]

세 대		임대	조건			전환가능	최대전환 시	l 임대조건
세 대 구성원수	711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5	전환기 <del>능</del> 보증금 한도액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5%)	잔금(95%)					
2구간 입	주자 (기준 중위	기소득 대비 <b>50</b> 9	% 이하) : 세	대구성원수가 4	인 (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임대조건	과 동일
	40,000,000 54,005,000 424,400							124 400
3인	32,337,000	1,616,850	30,720,150	230,200	+	19,000,000	51,235,000	134,480
J <u>J L</u>	32,331,000	1,010,030	30,720,130	230,200	-	25,000,000	7,337,000	282,280

##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임대조건

[단위 : 원/월]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공급형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5%)	잔금(95%)	걸입네표			임네포공급	끌김네포
10 A D	1 706 000	90,000	1 707 000	35,770	+	전환불가	전환불가	전환불가
18A,B	1,796,000	89,000	1,707,000	35,770	-	전환불가	전환불가	전환불가
26A	2 604 000	130,000	2.474.000	51,860	+	전환불가	전환불가	전환불가
20A	2,604,000	130,000	2,474,000		-	1,000,000	1,604,000	53,940
26 A D	2 565 000	179 000 2 207	3,565,000 178,000 3,387,000	70.000	+	전환불가	전환불가	전환불가
36A,B	3,565,000	176,000	3,387,000	70,980	-	1,000,000	2,565,000	73,060
46A	46A 4,542,000	227 000 4 315 000	4,542,000 227,000 4,315,000 90,450	+	전환불가	전환불가	전환불가	
40/4	4,342,000	221,000	4,515,000	30,430	-	2,000,000	2,542,000	94,610
56A	5,555,000	5,555,000 277,000 5,278,000 110,610	110,610	+	전환불가	전환불가	전환 <del>불</del> 가	
	3,333,000	277,000	3,210,000	110,010	-	2,000,000	3,555,000	114,770

## 15. 갱신 임대조건

## 기본원칙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자산, 면적기준, 거주기간)을 갖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의 임대조건은 갱신계약 시점의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임차인 세대의 월평균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소득구간계수(0.35~0.9)를 적용하여 산정한 임대조건으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5%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 적용됩니다. 다만, 동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소득 및 자산기준 초과자는 제외하며, 자세한 사항은 「임대조건의 할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산정 방법
- 「갱신시점의 임대시세로 산정한 임대보증금(또는 임대료) 금액」과 「전 회차 임대보증금(또는 임대료)에 인상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보증금	MN【갱신시점 시중 전세시세 전 호차 시점의 적용시세 × 임대조건 인상률】× 갱신 시점의 소득구간계수 × 35%
월임대료	MN【갱신시점 시중 전세시세 전 화차 시점의 적용시세 $\times$ 임대조건 인상률】 $\times$ 갱신 시점의 소득구간계수 $\times$ 65% $\times$ 시장전환율 $\div$ 12

- 시장전환율은 실제 해당지역에서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을 말합니다.
- (예시) 시중시세 5% 이상 지속 증가 + 입주자 소득변동으로 소득구간 계수가 변경(2→3→1구간)되는 경우

[단위 : 원]

구분	① 시중 전세시세	② 갱신 시 인상한도	적용시세	소득구간계수	임대조건 (시장전환	탄율 4% 가정)
丁世		(임대조건 인상률 5%가정)	(MIN[①,②])	꼬륵무신계구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1구간) 35%	12,250,000	75,830
최초계약				(2구간) 40%	14,000,000	86,660
	100,000,000	_	100,000,000	(3구간) 50%	17,500,000	108,330
	100,000,000	_	100,000,000	(4구간) 65%	22,750,000	140,830
				(5구간) 80%	28,000,000	173,330
				(6구간) 90%	31,500,000	195,000
	120,000,000 105,000,000 105,000,00		(1구간) 35%	12,862,000	79,620	
		105,000,000	105,000,000	(2구간) 40%	14,700,000	91,000
1차				(3구간) 50%	18,375,000	113,750
갱신계약				(4구간) 65%	23,887,000	147,870
				(5구간) 80%	29,400,000	182,000
				(6구간) 90%	33,075,000	204,750
				(1구간) 35%	13,505,000	83,600
		110,250,000		(2구간) 40%	15,435,000	95,550
2차	130,000,000		110,250,000	(3구간) 50%	19,293,000	119,430
갱신계약	130,000,000		110,250,000	(4구간) 65%	25,081,000	155,260
				(5구간) 80%	30,870,000	191,100
				(6구간) 90%	34,728,000	214,980

• 소득(6구간), 자산, 면적 및 거주기간 초과자는 갱신 임대조건에 할증이 부과되며, 자세한 사항은 「임대조건의 할증」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의 할증

입주자격을 갖추고 입주하였으나, **갱신계약 시(면적기준은 최초계약 시에도 적용)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차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할증된 임대조건이 부과(①~④)**됩니다. 할증이 두 개 이상의 항목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

#### ■ 할증조건

#### ① 소득기준 초과

• 갱신계약 시 소득기준(6구간,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을 초과한 경우, 소득구간계수 0.9(6구간)을 적용한 갱신 계약 시 임대조건에 소득기준 초과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해당 세대의	10%p 이하	105%	110%
월평균소득이	10%p 초과 30%p 이하	110%	120%
기준중위소득의	30%p 초과	115%	130%

<sup>※ 30%</sup>p 초과 구간을 적용받는 사람은 해당 주택에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할증비율에 최초 갱신 시 10%p, 2회차 갱신 시 20%p를 더하여 할증하고 3회차 이상부터는 직전 적용받았던 할증비율에 10%p씩 계속 가산 할증됩니다.

## ② 자산기준 초과

- 갱신계약 시 자산기준(292백만원)을 초과한 경우,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에 130%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합니다.
- ※ 해당 주택에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갱신 시 10%p, 2회차 이상부터는 직전 적용받았던 할증비율에 10%p씩 계속 가산하여 할증됩니다.

#### ③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초과

• 최초 또는 갱신계약 시, 세대원수별 공급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세대에 대한 최초 또는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에 다음과 같은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합니다. 다만, 거주 중 세대원수 감소로 인한 공급 기준 면적 초과 시에는 해당 세대원수 공급면적의 주택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대원수별 공급면적	입주 후 세대원수 변화
1인 : 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 (중증장애인은 50㎡ 초과 60㎡ 이하)	105%

## **4** 최대 거주기간(30년) 초과

• 갱신계약 시, 입주자격을 갖추었으나, 최대 거주기간(30년)을 초과한 세대에 대한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에 다음과 같은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합니다.

거주기간 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시	거주기간 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10%	120%

## ■ 할증조건의 중복적용 시

• 임대조건 할증조건(①~④)이 중복되는 입주자에 대한 갱신계약 시,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에 가장 높은 할증비율** 만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합니다.

• (예시) 고령자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대비 190%, 자산 5억원, 공급면적 56m², 최초 갱신계약 시

① 소득기준(*)	② <b>자산기준</b>	③ <b>면적기준</b>	최종 할 <del>증</del> 률
110%	130%	105%	130%

<sup>(\*) 1</sup>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70% 대비 20% 초과

## ■ 할증조건의 예외대상

임대조건 할증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대상에 해당하는 입주자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의2 및 국토교통부 고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할증(소득, 자산, 면적기준 초과에 한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칙 및 고시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우선공급

	예외대상		할증 적용여부	
	세펀테요	① 소득기준 초과	② 자산기준 초과	③ 면적기준 초과
【챁	덜거민 등】시행규칙 별표5의2 제2호 나목의 1)			
	가) 공공주택건설사업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미적용	미적용	적용
	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주택의 세입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포함)	미적용	미적용	적용
	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미적용	미적용	적용
	라) 공공사업 중 非GB해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적용	미적용	적용
	라) 공공사업 중 GB해제 택지개발 또는 도시개발사업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미적용	미적용	적용
	마) 산업단지개발사업 주택의 세입자	미적용	미적용	적용
	자)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미적용	미적용	적용
	차) 공익사업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미적용	미적용	적용
[7	· 사정폭력 피해자 등】시행규칙 별표5의2 제2호 나목의 3)			
	가)의 (6) 가정폭력 피해자	적용	미적용	적용
	나)의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미적용	미적용	적용
	나)의 (2) 소년소녀가정	미적용	적용	적용
	나)의 (3) 해외거주 재외동포	미적용	적용	적용
	나)의 (4) 국군 등록포로	미적용	적용	적용
[2	· 공통사항] 세대원수 감소로 인한 공급기준 면적 초과 시 해당 세대원	수 공급면적의 주	택으로 이동이 불	가능한 경우
	모든 입주자격 구분별	-	-	미적용

## •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별표5의2(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를 초과하더라도 입주자격 구분별 소득구간 상한까지는 소득기준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급대상	신청자격	임대조건
(일반 <del>공급</del> ) 청년, 고령자, 일반	① 가구원 수가 1명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170% 이하인 자 ② 가구원 수가 2명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160% 이하인 자	
(일반 <del>공급</del>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① 가구원 수가 3명 이상이고 본인 및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180% 이하인 자② 가구원 수가 2명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초과 160% 이하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혼인할 상대방)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상한을 190% 이하인 자로 한다.	6구간

<sup>-</sup> 세대원수 감소로 인한 공급기준 면적 초과 시 해당 세대원수 공급면적의 주택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면적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지 않음

## 16.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안전기준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거실	시각경보기 설치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지체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청각장애인
		동체감지기 설치(동작 On/Off 선택 가능)	전체세대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 내외로 설치	지체장애인, 휠체어사용자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하며,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비디오폰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매립되어 시공되기 때문에 입주자 계약체결 예정일('22.07) 전 비디오폰 높이가 결정되면 조정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고령자 단독 거주 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계약시 별도 신청 필요)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유의사항]

- ▶ 신청 주택의 공사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 (신청시 필요서류)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 (신청기간) 계약 체결기간 내

구분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 치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cm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 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 이상 장애인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30 3E 08 8ME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방	좌식 씽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17.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 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del>공공근</del> 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고용노동부 직접일지리사업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 하는 소득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 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 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 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 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지방세정 자료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 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부 차적정보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기타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지방세정 자료
자산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금융정보 조회결과
	ㅁ 6 시 년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ㅁㅇㅇㅗ ㅗ뉘ㄹ뉘
		금융기관 대출금	
	부채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금융정보 조회결과
(종	F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힙	·계에서 차감)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
		임대보증금 자료 또는 직권조사	
	<b>나동</b> 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18.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 1. 지체장애인

-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 2. 뇌병변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 3. 시각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4. 청각장애인

- 가. 청력을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 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 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q) 이하인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 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 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 13. 안면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 14. 장루 • 요루장애인

-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 15. 뇌전증장애인

- 가. 성인 뇌전증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 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 28.

